2026. 11.

미국 미국 환자권익단체, 의료 행위 및 시술 표준화 코드의 저작권 보호 범위 둘러싼 소송 제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박경신

1. 개요

2026년 8월 13일 미국 비영리 의료 소비자 단체인 PatientRightsAdvocate.org, Inc.(이하, 'PRA')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이하 'AMA')가 개발·관리하는 의료 행위 및 시술 표준화 코드(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이하 'CPT')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할 수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소송을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하였다.

PRA는 현행 의료행위 분류 코드가 정부 의료제도에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공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AMA가 저작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요 사실관계

원고 PRA는 의료 시장의 투명성, 경쟁,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의료 소비자 단체이다. 피고 AMA은 의사 및 의대생들을 대변하는 직능 단체로, CPT를 개발·관리하고 있다.

CPT는 의료 행위를 분류하는 5자리 코드 세트인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방 및 주 법률은 CPT를 채택하여 대부분의 의료비 청구 거래에서 그 사용을 의무화해 왔다. 연방 및 주 법률이 CPT를 법으로 편입하는 주된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위한 코딩 시스템의 일부로 CPT를 채택하였다.

② HHS가 전자적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 표준의 일부로 CPT를 채택하였다.

③ 주 및 기타 연방 규정이 진료비 상환 청구, 보고 의무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법률 및 규정에서 CPT를 명시적으로 인용에 의해 편입(incorporate by reference)하였다.

3. 주요 쟁점

1) · CPT의 저작물성

PRA는 연방 HIPAA 기준은 CPT를 직접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 15개 주가 법령에서 CPT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에의 편입을 통해 CPT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PRA는 CPT가 법률에 편입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표현을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저작물이며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은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CPT의 조문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의식적으로(consciously)"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게다가 HHS는 CPT를 법률에 편입할 목적으로 매년 이를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PRA는 CMS 관계자가 CPT 편집위원회의 투표 위원 또는 연락 담당자로 참여하여 코드 제정과 수정에 관여했으므로,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저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정이용 여부

PRA는 AMA의 저작권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CPT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공정이용 판단 시 첫 번째 고려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온라인상 무료 게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공익적 교육 목적이며, 독점 판매 목적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형성이 인정된다.

② 공정이용 판단 시 두 번째 고려 요소인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CPT는 전자적 의료 거래를 규율하는 연방 규정을 개정·갱신할 목적으로 관리·유지되는 문서로 표현적·예술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며, 기껏해야 가장 미약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만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정이용 판단 시 세 번째 고려 요소인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실질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가 CPT 전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므로, 공공에게 법률에 대한 무료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복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④ 공정이용 판단 시 네 번째 고려 요소인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PRA가 CPT를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AMA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은 저작권법상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설령 PRA의 공개 계획으로 인해 AMA의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AMA는 CPT 제작에 기여할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받을 것이다.

3) 저작권 남용

PRA는 AMA가 PRA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PRA는

1997년 제9순회항소법원이 *Practice Management* 판결[1]에서 AMA의 독점 라이선스 조항을 저작권 남용으로 판단한 후, AMA는 독점 조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러한 남용을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저작권 남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① 독점 조항이 없더라도,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CMS로 하여금 AMA의 저작권 있는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CMS가 다른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PT는 CMS가 채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의료 행위 코딩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이므로, CMS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해 다른 코드 시스템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없다.

② AMA는 독점 조항을 이용하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의 필수 코드 시스템이 되었고, 독점 조항을 포기하더라도 AMA가 이미 필수 시스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이점은 부인될 수 없다. HCFA(현 CM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AMA 표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기타 관계자들이 투입한 매몰비용을 감안하면 단순한 계약 조항의 변경만으로는 이렇게 부당하게 얻은 장점이 쉽게 사라질 수 없다.

4. 시사점

Practice Management 판결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CPT에 대한 저작권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AMA가 경쟁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CPT에 대한 라이선스를 HCFA에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CPT가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ractice Management 판결 이후 2020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지아 주법과 주법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 또한 2023년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이 민간단체가 개발해 법률에 참조로 편입된 기술적 표준을 비영리단체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이 기술적 표준이 법률에 포함된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상황이다.[3] 그러나 이번 소송은 민간 단체가 작성했더라도 정부 규정에 준용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사적 표준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에 편입된 민간 표준은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는 법리가 확립될 경우, 미국 전역의 민간 표준 제정 단체들의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 Practice Management Information Corp. v.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21 F.3d 516, 9th Cir. 1997)

2)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590 U.S. 255 (2020). 이 사건에서 법률, 법률 주석, 판결문 등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일반 공중이 무료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비영리 단체인 피고는 조지아 주정부의 허락 없이 공식 조지아 주 법률 주석집(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의 사본을 스캔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의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조지아 주정부와 조지아 주 주석집 개정위원회(Code Revision Commission)는 피고를 상대로 조지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No. 17-7035 (D.C. Cir. July 17, 2018). 이 사건에서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판결의 피고는 민간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기술적 표준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되었다.

참고자료

- https://www.plagiarismtoday.com/2026/08/18/the-copyright-fight-over-medical-billing-codes/
- https://www.healthcarefinancenews.com/news/ama-sued-over-copyright-cpt-codes
- https://www.healthcaredive.com/news/patient-rights-advocate-sues-ama-cpt-billing-codes-copyright/827830/